

공모부동산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담당	책임자

① 성명 : _____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④ 투자일 (신규일)	⑤ 금융기관 펀드계좌번호	⑥ 투자대상 (펀드명)	⑦ 투자금액 (투자한도금액)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2021년1월1일 이후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하나은행장 귀하 대리인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④ 2020년1월1일 이전에 투자한 경우 2020년1월1일을, 2020년1월1일 이후에 투자한 경우 실제 투자일을 적습니다. (2020년 이전 투자한 계좌를 과세특례 신청할 경우는 2020.1.1로 기재합니다.) (2020.1월 이전 계좌는 폐쇄명펀드만 신청가능합니다.)
- ⑤ 투자를 위탁하거나 매대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⑥ 투자대상은 투자자가 주식 등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재간접투자기구의 이름을 적습니다. (펀드명 기재)
- ⑦ 투자금액(투자한도금액)은 고객별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좌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2021년1월1일 이후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2020년 이전 투자 계좌를 분리과세신청할 경우 투자일을 2020.1.1일로 간주하므로, 2020.1.1일로부터 잔존기간이 3년 이상인 펀드만 신청가능합니다.(과세특례 적용기간은 신청일 이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3년중 잔여기간동안 분리과세됩니다.) 기존가입자 신청시 투자금액(투자한도금액) 산정은 신청 당일 평가금액 기준이며, 신청일 이후 매입분은 매입원금 기준입니다.
- 과세특례 신청이후 보유기간 3년을 유지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펀드의 운용상 이슈로 인해 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청산되는 경우 고객이 투자한 매수체결일로부터 청산일까지 3년 미보유시 추징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천재지변 거주자의 3개월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 질병의 발생,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법령에 따른 소규모펀드청산)
- 3년 보유 기준일은 매수체결일이며, 매수체결일을 기준으로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결산후 재투자금액도 투자금액으로 간주하여 투자한도금액 산정시 반영됩니다.
- 선취수수료 차감후 투자금액을 투자한도금액 산정시 반영합니다.
- 3년 경과 후 발생한 과표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결산 유보 과표금액 보유상태에서 3년 이후 해지할 경우 결산유보과표금액은 일반과세됩니다.)
- 분리과세신청후 일부환매는 한도초과 입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한도범위내는 전액환매만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신청후 과세특례적용기록(결산재투자 포함)이 있는 경우 일부환도감액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만 가능합니다. 일반과세 전환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개정시 고객에게 사전 통지 없이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 3서식]을 준용하였습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안내

- 2021년1월1일 이후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2020년 이전 투자 계좌를 분리과세신청할 경우 투자일을 2020.1.1일로 간주하므로, 2020.1.1일로부터 잔존기간이 3년 이상인 펀드만 신청 가능합니다.(과세특례 적용기간은 신청일 이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3년중 잔여기간동안 분리과세됩니다.) 기존가입자 신청시 투자금액(투자한도금액) 산정은 신청 당일 평가금액 기준이며, 신청일 이후 매입분은 매입원금 기준입니다.
- 과세특례 신청 이후 보유기간 3년을 유지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펀드의 운용상 이슈로 인해 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청산되는 경우 고객이 투자한 매수체결일로부터 청산일까지 3년 미보유시 추징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천재지변 거주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법령에 따른 소규모펀드청산)
- 3년 보유 기준일은 매수체결일이며, 매수체결일을 기준으로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결산 후 재투자금액도 투자금액으로 간주하여 투자한도금액 산정시 반영됩니다.
- 선취수수료 차감 후 투자금액을 투자한도금액 산정시 반영합니다.
- 3년 경과 후 발생한 과표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결산 유보 과표금액 보유상태에서 3년이후 해지할 경우 결산유보과표금액은 일반과세됩니다.)
- 분리과세신청 후 일부환매는 한도초과 입금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한도범위내는 전액환매만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신청 후 과세특례적용기록(결산재투자 포함)이 있는 경우 일부한도감액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만 가능합니다. 일반과세 전환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개정시 고객에게 사전 통지 없이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 3서식]을 준용하였습니다.

